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4명(6급 13명, 7급 1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5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1명(6급 7명, 7급 4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국가데이터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6급 4명, 7급 5명) 중 1명(6급 1명)은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8명(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4.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4 중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9”를 “208”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88”을 “189”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6”을 “137”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방호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36”을 “137”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5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6년 7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공포한날
2.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2026년 6월 30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3명, 행

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명, 행정서기·통계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농업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별표 5의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33
일반직 계	3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7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6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6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전산서기 · 농업서기 · 공업서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6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사서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 업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단서 신설>	제2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다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 2와 같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
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
(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
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6년 5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통계주
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통계서기·공
업서기·농업서기·전산서기·
사서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
서기 11명)으로 본다.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
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
업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
·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농
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
서주사보 4명)은 2026년 7월 2
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
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
원은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
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
보·농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
·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028년 6월 30
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
일 -----

기·전산서기·사서서기·운전
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⑤ ~ ⑦ (생 략)

⑧ 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
명(행정주사·통계주사·공업
주사·전산주사·농업주사 또
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
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
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5명)은 2026년 7월 2일
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
·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전
산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사
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통계
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농
업서기·전산서기·운전서기 5
명)으로 본다.

-----.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 주사 · 전산주사 · 농업주 사 또는 사서주사	<u>209</u>	<u>208</u>	-1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사서 주사보	<u>188</u>	<u>189</u>	+1
·	·	·	
·	·	·	

[별표 6]

지방데이터청 ·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사서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6</u>	<u>137</u>	+1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

[별표 7]

지방데이터청 ·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통계서기보 · 사서서기보 · 방호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 보 또는 운전서기보	<u>136</u>	<u>137</u>	+1
사무운영서기보	<u>10</u>	<u>9</u>	-1